

2026학년도 제3차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6년 9월 10일(목) 14:00 ~ 14:30

2. 장소: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

3. 참석위원: 총무처장 명선영(위원장), 안전팀장 박미숙
안전팀 김민식, 창조중부보건안전 조예은
건축시설팀 반장 황지제, 아이비푸드 영양사 이윤미
삼구아이앤씨 소장 주광호
※ SK쉴더스 팀장 문재구 불참

4. 안 건

제1호 의안: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(법 제16조)

제2호 의안: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(법 제62조)

제3호 의안: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(법 제23조)

5. 회의 내용

가. 개회

위원장은 2026학년도 제3차 안전보건위원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
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건심의

1) 제1호 의안: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(법 제16조)

- 위원장: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안전관리자: 운정캠퍼스 정창훈 보안팀장으로 선임 변경을 설명하다.
- 위원장: 제1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2) 제2호 의안: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(법 제62조)

- 위원장: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안전관리자: 2026. 9. 1.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팀장 변경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박미숙으로 선임 변경을 설명하다.
- 위원장: 제2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3) 제3호 의안: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(법 제23조)

- 위원장: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안전관리자: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인원을 검토하여 위촉하여야 함을 설명하다.
우리 대학교 현업근로자 중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경우 사업장 점검 참여 및 안전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등의 업무를 설명하다.
- 위원장: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의견을 묻다.
- 근로자대표: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없음 의견을 내다.
- 위원장: 제3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사항 없음으로 의결하다.

※ 기타 논의

1) 제2차 회의 제2호 안건 시행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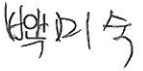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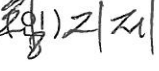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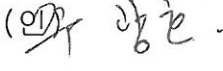
- 안전관리자: 법 제36조에 따른 대학 위험성평가를 현업근로자 98명(영선 및 미화업체 자체실시)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청취 후 (주)한국안전경영연구원에 의뢰하여 2026. 5. 20.(수)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, 지적사항 30건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실행 후 그 결과를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(대학 생활 > 대학안전보건 > 안전보건관련 법령 > 산업안전보건법)에 게시하였고 소속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설명하다.

다. 폐회선언

위원장은 더 이상의 안건 및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26년 9월 10일

기록자: 박미숙

위원장	명선영	
위원	박미숙	
위원	김민식	
위원	조예은	
위원	황지제	
위원	주광호	
위원	문재구	(인) 
위원	이윤미	

[2026학년도 제3차 안전보건위원회]



2026. 9. 10.(목) / 14시 /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



성신여자대학교

2026학년도 제3차 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

2026. 9. 10.

총무처 안전팀

2026학년도 제3차 성신여자대학교 안전보건위원회

□ 개 요

- 일 시 : 2026. 9. 10.(목) 14:00
- 장 소 :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
- 안전보건위원회 참석위원

연 번	구 분	위 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1	위원장	당연직	총 무 처	처장	명선영	안전보건 관리책임자
2	사용자 위원	위촉직	안 전 팀	팀장	박미숙	안전보건 총괄책임자
3		당연직	안 전 팀	담당	김민식	안전관리자
4		당연직	창조중부보건	담당	조예은	보건관리자
5	근로자 위원	당연직	건축시설팀	반장	황지제	근로자 대표
6		위촉직	삼구아이앤씨	소장	주광호	
7		위촉직	SK 월더스	팀장	문재구	
8		위촉직	아이비푸드	영양사	이윤미	

□ 상정안건 (3건)

NO.	안전보건위원회 안건	근 거 (산업안전보건법)
1	▶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	▶ 제16조
2	▶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	▶ 제62조
3	▶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	▶ 제23조

안전 1

관리감독자 선임 변경

☐ 관계법령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

☐ 안전내용

○ 보안업체(운정캠퍼스) 관리감독자 변경

구분	소속	직급	성명	임 면 사항		임면일
				면	임	
기존	SK 윌더스	팀장	김현지	성신여자대학교 관리감독자	-	2026.6.30
변경			정창훈	-	성신여자대학교 관리감독자	2026.7.1

안전 2

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

☐ 관계법령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2조

☐ 안전내용

○ 2026. 9. 1.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팀장 변경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(도급사업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) 변경

구분	소속	직급	성명	임 면 사항		임면일
				면	임	
기존	안전팀	팀장	이종철	성신여자대학교 안전보건총괄책임자	-	2026.8.31
변경			박미숙	-	성신여자대학교 안전보건총괄책임자	2026.9.1

안전 3

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

□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, 제33조

□ 안전내용
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현업근로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

○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

-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
-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·기구 자체검사 참석
-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에 신고
-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
-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-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
-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-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
-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-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

-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등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

산업안전보건법

제16조(관리감독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.

제23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, 근로자단체,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이 조에서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”이라 한다)을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노동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, 업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·권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32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이하 “명예산업안전감독관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.

1.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
3.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4.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
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(제8호는 제외한다)로 한정하며,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.

1.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(이하 “근로감독관”이라 한다)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
 2.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·기구 자체검사 참석
 3.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
 4.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
 5.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 6.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
 7.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 8.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
 9. 안전·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 10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제33조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
- 1의2.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,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경우
2.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
3.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4.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